

R

636.4089

L293E

# 돼지콜레라 방역 지침서

1999. 3.

농 립 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 협 중 앙 회

# 발 간 사

국내의 외환위기와 국제무역질서의 무한경쟁화 등 급변하는 여건하에서 우리의 축산업도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향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내의 축산업 특히 양돈산업은 서구 선진 양돈국과는 달리 최근 30여년 간에 급속히 양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돼지콜레라, 설사병 같은 악성질병에 의한 생산성저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돼지콜레라는 국제수역사무국이 지정한 축산업에 피해가 심각한 질병인 List A질병중의 한가지로 이병이 발생하는 국가는 비발생 국가로 돼지나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인 일본은 '93년부터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2000년까지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행정기관, 양돈경영자, 양돈단체, 가축위생관련 전문가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근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01년부터는 국내의 돼지콜레라가 근절되지 못할 경우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길은 완전히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출물량의 내수화로 국내의 돼지고기 가격은 크게 하락되고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양돈산업의 파장은 달리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제 2년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돼지콜레라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한마디로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의행정기관, 학계의 양돈전문가, 양돈단체 및 지역수의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양돈농가의 문제를 지도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앞서 양돈농가 스스로의 문제인식과 자세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의 제주도 돼지콜레라방역에서 우리의 양돈단체, 양돈농가, 행정기관의 방역담당자가 보여준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돼지콜레라 방역매뉴얼의 발간은 일선의 방역담당자들이 유사시 방역요령을 숙지하고 일사분란하게 사태를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명실공히 선진양돈의 길을 열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999년 3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

김 욱 경

# 목 차

I. 돼지콜레라 근절의 필요성	3
II. 돼지콜레라의 임상소견 및 병변	6
III. 신고요령	9
IV. 발병의심 농장에 대한 임시 방역조치	11
V. 가검물 의뢰	12
VI. 진 단	13
VII. 발병농장의 방역조치	15
VIII. 역학조사	20
IX. 살처분 및 보상	24
X. 소독요령	27
XI. 기타 고려해야할 사항	29
XII.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환경 저항성	32
XIII. 관련 법규 및 고시	33
XIV. 부록	74

**여 백**

## I. 돼지콜레라 근절의 필요성

국내 양돈업이 오늘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한마디로 갖은 시련 속에서도 내일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60년대 마당 한구석의 돼지우리 부업에서 불과 30년 사이에 전업 또는 기업형의 현대 양돈산업 기반을 조성하였으니 이는 양돈인들이 그 동안 흘린 땀과 각고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양돈인들이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돼지콜레라 근절이며 이 길을 통하여 IMF란 험한 고개를 슬기롭게 넘고 또한 내일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대 일본 돼지고기 수출실적은 8월말 현재 냉장육 10,782톤과 냉동육 45,497톤을 수출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81.4% 정도 물량이 증가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돼지고기의 수출물량이 내수용으로 전환되었다면 IMF 한파로 인하여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돼지고기 소비현상과 겹쳐 어떠한 일이 예상될까? 이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양돈인들 모두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겠다.

돼지콜레라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이 병이 발생하는 나라는 발생하지 않는 나라로 돼지는 물론 돼지고기도 수출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활로를 열 수 있는 수출양돈산업 육성은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지 않고는 공염불에 불과한 현실이다. 우리의 돼지고기 수출국인 이웃 일본은 '93년부터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으며 현재 2000년까지 이 병의 근절목표를 설정하고 각 지역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인 都道府縣家畜畜産物衛生指導協會(양돈경영자, 양돈관련 지역단체 및 가축위생관계자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함)에서 백신접종과 혈청검사 등 체계적인 근절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0년까지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완수하고 이후 2001년부터는 이 병이 발생하는 나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할 계획이며 대 일본 돼지고기 수출국인 미국, 덴마크, 캐나다 등도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금후 2년 동안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지 못하면 2001년 수출목표인 9억불(약 1조2천억원)의 외화획득이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에서 투입한 2조원이 넘는 수출양돈 기반조성 자금이 내수용 돼지고기의 과잉생산을 초래함으로써 국내 양돈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양돈산업관련인과 정부가 힘을 합쳐 보다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돼지고기 및 내장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에 돼지콜레라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①수출용 돼지고기 생산에 제공된 돼지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농장에서 출하된 것이거나 또는 한국정부 당국이 승인한 돼지콜레라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돼지의 사육농장으로부터 출하된 것이어야 하며 ②수출용 돼지고기 생산에 제공된 돼지를 사육한 농장과 그 농장주위 반경 2km 지역에서 선적전 최소한 40일 이상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어야 하고 ③수출용 돼지고기 생산 농장은 돼지고기 선적전 적어도 40일 동안 돼지콜레라 감염지역으로부터 돼지를 입식한 사실이 없

어야 한다 ④또한 대 일본 돼지고기 수출작업장은 돼지콜레라 감염지역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즉 반경 2km 이내에 적어도 40일 이상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이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려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어야 하는데 올해에도 6건이 발생하였으니 수출을 지향하는 국내 양돈산업의 장래는 실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라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수역사무국이 지정한 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서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이 막 실행되기 시작할 때쯤 네덜란드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되어('97. 2. 3) 관련도축장 폐쇄, 돼지의 이동제한, 발생농장 주위의 농장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의 선행도축 실시 등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으나 4개월 동안 이 병에 의한 피해액은 약 3,157억원으로 추정하였으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98년 3월 현재 429개 양돈장이 감염되었으며 그 동안 살처분, 도태 또는 번식제한 등으로 1,000만두 이상의 돼지가 손실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EU 각국으로 수출금지조치가 6개월 계속되면 약 1조1천2백75억원의 추가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단기간내에 초래된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유럽국가들이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나 짧은 기간내에 이 병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역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일사분란하게 노력한 결과 네덜란드에서는 현재 이 병이 근절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1997년 8월 양돈통계에 의하면 돼지콜레라 발생여파로 전년동기 대비 약 225만두(16.1%) 감소한 1,170만두로 나타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으며 독일과 스페인에서도 각각 82,000두 및 60만두 이상이 살처분 도태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 유럽의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1997년 3월 10일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460만두 이상의 돼지가 폐사하거나 도태되고 대 일본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됨으로써 총 2조4천억원의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초래된 결과를 우리들은 똑똑히 보아왔다. 돼지콜레라 발생전 1996년말 대만의 돼지사육두수는 약 10,700천두 이었으나 1998년 5월에는 약 7,124,800두로 감소되었으며 이 병의 근절이 예상되는 2003년 이후에야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돼지콜레라 또는 구제역 등 특정전염병이 발생할 시 한 국가의 양돈산업이 단기간내에 붕괴되는 현실을 우리 모든 양돈인은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며 또한 피해 당사국의 근절대책을 거울삼아 우리 각자가 해야할 임무를 꼼꼼히 챙겨보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계획은 피해최소화단계, 청정화조성단계 및 근절화인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제1단계의 목표인 발생 및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전국적인 백신접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만약 양돈농가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접종요령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 비교적 단기간내에 돼지콜레라 발생이 종식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축장 출하돼지에서 돼지콜레라 항체양성율은 약 76.1%로 기대치(95% 이상)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또한

항체 수준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일부 양돈농가에서 아예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백신프로그램을 무시한 채 조기이유시(생후 20~25일령)에 백신을 한번만 접종하고 2차 접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병의 근절이 화급한 실정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돈농가에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지침대로 실시하여 머지않아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2단계의 청정화 조성단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모든 양돈관련 종사자들은 “배짱이와 개미의 일화”를 명심하여 후회 없는 내일을 준비합시다!

## II. 돼지콜레라의 임상소견 및 병변

돼지콜레라는 증상이나 병변과 함께 병력을 참고하여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아프리카돼지콜레라, 살모넬라감염증 등과의 감별진단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 병의 증상과 병변은 바이러스주의 독력, 감염돼지의 일령, 개체의 면역 상태 그리고 타 질병과의 혼합 감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징적인 임상소견 및 병변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돼지콜레라의 확진을 위하여 가검물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 또는 각 시도 가축방역기관(이하 가축위생시험소)의 실험실로 보내야 한다.

### 1. 임상소견

돼지콜레라의 임상증상은 급성형과 만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급성형 돼지콜레라

- 돈군에 돼지콜레라가 처음 발생할 때에는 단지 몇 마리의 돼지에서만 임상증상을 보이며 식욕결핍, 후구마비 등 신경증상 또는 혼수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6일 이내 체온이 42℃까지 높아지나 독력이 약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경우에는 체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 초기 증상으로 눈곱이 끼고 변비증상이 나타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황회색의 수양성 설사를 하게된다.
  - 감염돈군의 돼지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모여있거나 포개어 있으며 오한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 백혈구 수는 전형적으로 혈액 ㎖당 보통 3,000~9,000까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감염 후기에 살모넬라 및 파스튜렐라가 혼합감염되면 백혈구 증가증이 나타날 수 있다.
- ※ 전형적인 돼지콜레라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험이 없는 생산자나 기타 사람들은 돼지콜레라를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 전형적인 형태의 돼지콜레라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나. 만성형 돼지콜레라

- 만성형 돼지콜레라는 약독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발생되며 흔히 위축돈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 몇주 후 일반적으로 식욕과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경과할 수록 많은 돼지가 병이 재발하거나 폐사한다.
- 약독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중에서는 17주까지 생존하며 어떤 경우는 21주까지도 생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지속된다. 그러나 다른 세균성 질병 등에 혼합감염되면 백혈구 증가증이 나타난다.
-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어떤 돼지는 노란색을 띤 담즙색 액체를 토해내거나 또는 피부의 진전증상이 관찰된다.
- 많은 경우에 흐느적거리거나 비틀거리며 걸음걸이가 특징인 현저한 신경증상을 보인다.
- 수주동안 생존한 돼지는 낮은 정도의 발열, 백혈구 감소증과 전반적으로 외관상 일시적인 호전을 보이다가 식욕감소, 침울, 설사, 체온상승 그리고 폐사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만성 돼지콜레라 증상으로 발전된다.

## 2. 병 변

### 가. 급성형

- 처음 심급성으로 폐사한 돼지에서는 돼지콜레라 병변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임신모돈에서 미이라나 사산이 관찰될 수 있다. 감염 태아는 부종성이며 복수가 차고 두부와 사지기형, 피부 및 각종 장기의 점상출혈, 그리고 폐와 소뇌 형성부전 등이 나타난다.
- 귀, 복부 및 서혜부 등의 피부에 자반이 나타나며 이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자주색 변색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비장에는 점상·반상출혈 및 출혈성 경색이 관찰된다.

- 각종 림프절은 병리학적 변화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내부장기이다. 림프절 가장자리 부위에 수종 및 출혈 소견이 관찰된다.
- 종종 관찰되는 병변으로 편도선과 인후두부위의 괴사 및 출혈, 그리고 심장, 방광 등 각종 장기의 점·반상 출혈과 대장(종종 결장 부위)에서 단추상 궤양이 관찰되기도 한다.
- 신장 출혈은 급성 돼지콜레라의 다른 어떤 병리학적 변화보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출혈은 점상 및 반상으로 신장의 피막하 표면에 발생하며 드물게 신추체(pyramid)와 신문(hilus)에도 나타난다.
- 급성 또는 아급성 돼지콜레라에 걸린 일부 돈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폐출혈과 급성 기관지폐렴을 보인다.
- 종종 돼지콜레라 부검소견이 아프리카돼지콜레라, 살모넬라증, 톡소플라즈마 감염증 및 돈단독 등과 유사하므로 실험실 확진을 받아야 한다.

#### 나. 만성형

- 약독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에서 주로 관찰되는 병변은 림프절이 종대되고 창백하며 습윤해 보이는 것이다.
- 신장에 가끔 심한 점상 또는 반상출혈이 나타난다(Turkey Egg Kidney).
- 만성 돼지콜레라 병변은 급성의 경우와 비슷하나 덜 심한 편이다. 만성으로 감염된 돼지는 출혈이 거의 없이 폐사하고 종종 맹장과 결장에 단추상 궤양이 있다. 만성 병변으로 괴사성 장염과 기관지폐렴이 흔히 나타난다.

### III. 신고요령

1. 농장에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돼지를 발견한 축주(관리인 포함)나 수의사는 즉시 시군의 가축방역담당자(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
2. 신고를 받은 시군에서는 가축위생시험소장에 즉시 통보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병성감정(XIII 참조)과 임시방역 조치(IV 참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병성감정실시 결과 돼지콜레라로 판정 될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는 즉시 도지사에게 발생보고를 하고, 도지사는 지체없이 농림부장관, 검역원장 및 타 시도지사에게 보고, 통보하여야 한다.
4.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의사 돼지콜레라 발생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농림부 장관, 검역원장 및 타 시도지사에게 보고, 통보하여야 한다.



## IV. 의심농장에 대한 임시 방역조치

시군 및 가축위생시험소는 돼지콜레라 발생이 의심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확진되기까지 다음의 임시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8 조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 6 조)

1. 시군 가축방역관은 돼지콜레라 의심농장에 대한 사육두수, 최초 발병일, 발병 두수, 구체적인 임상증상, 백신접종 상황 등을 조사해야한다.
  2. 가축위생시험소는 “V 가검물 의뢰”에 대하여 가검물을 채취해야 한다.
  3. 시, 군에서는 가축위생시험소의 협조를 받아 발생상황과 시설 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이환 의심 돼지의 격리,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최종 진단이 이루어지고 상황이 끝날 때까지 농장 내 가축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사료, 물 등을 확보하여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V. 가검물 의뢰

### 1. 가검물 채취방법

#### 가. 바이러스 검출 및 분리용 가검재료

- 바이러스 검출을 위해 편도선, 인후두 또는 림프절 그리고 비장을 가능한 무균적으로 채취한다.
- 생축일 경우 백혈구수 검사 및 바이러스 분리를 위하여 혈액을 채취하여야 한다.

#### 나. 병리조직 검사용 가검재료

-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신선한 뇌, 폐, 신장을 채취하고 편도선, 뇌, 인후두, 악하 림프절과 비장 등을 10% 중성 포르말린액에 넣어 고정한다(뇌는 앞뒤로 이등분 하여 고정한다).

### 2. 수 송

- 가검물 수송 중 용기가 파손되어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가검물을 멸균된 시험관 등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고 이를 충분한 양의 탈지면으로 싸서 충격으로부터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비닐주머니에 재포장하여야 한다.
  - 가검물은 냉장상태로 운송될 수 있도록 스티로폼 용기 등에 얼음을 채워 수송한다.
  - 가검물은 실험실까지 18시간 내에 도착 될 수 있도록 인편이나 항공편 또는 고속택배를 이용해서 수송하여야 한다.
  - 드라이아이스는 수송시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가검재료를 담은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가검물 의뢰인은 의뢰기관(별첨 참조)에 가검물의 내용과 수량, 예상 도착시간과 도착지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 항공규정에는 드라이아이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드라이아이스 포장을 할 때는 항공수송대행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VI. 진단

### 1. 진단에 필요한 가검 재료 및 시험법

- 실험실내에서 진단은 간접형광항체법으로 감염장기에서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하거나 바이러스를 분리동정함으로써 확진할 수 있다.
  - 편도선, 인후두, 악하림프절, 비장 등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분리를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장기이며, 최소한 편도선 조직과 혈청은 반드시 송부해야 한다. 편도선, 림프절, 비장 등에 대한 간접형광항체검사 결과는 실험실에 장기가 도착된 후 약 4시간 이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분리는 실험실에서 감염조직을 접수한 후 약 48시간이 소요된다.
  - 만약 적절한 조직재료가 실험실에 의뢰되었다면 실험자는 오제스키병,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살모넬라감염증, 돈단독, 특소플라즈마 감염증 등과의 감별진단에 유의해야 한다.
  - 또한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위해서는 10% 중성 포르말린액으로 고정된 편도선, 뇌, 인후두, 악하 림프절, 비장 등의 가검재료가 필수적이다. 포르말린에 고정된 뇌조직은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돼지콜레라를 잠정진단 할 수 있다.
  - 혈청내 돼지콜레라에 대한 특이항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효소면역법(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 ELISA), 효소중화시험(Neutralizing Peroxidase Linked Assay : NPLA), 형광항체중화시험(Fluorescent Antibody Neutralization Test : FAN) 등이 흔히 이용되고 있으나, 현재 ELISA 진단키트가 각 시도 가축위생위생시험소에 보급되고 있으므로 돼지콜레라 항체를 손쉽게 검사할 수 있다. 보통 혈청 접수 후 약 48시간 이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개체는 감염 14~21일 이내에 혈중 중화항체가 생성되어 5~6주 이내에 64 ~ 1,024배의 항체가를 나타낸다.
- \* 가검재료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간접형광항체법으로 항원을 증명하여 진단할 경우에는 최근 2주 내에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간혹 백신 바이러스가 접종 후 약 2주 동안 일부 장기에서 검출될 수 있다!!!

## 2. 최종 진단

-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병성감정실시지정기관에서 돼지콜레라를 진단할 때에는 임상증상, 병변, 실험실 정밀 검사결과 등에 근거하여 확실한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 돼지콜레라 발생이 의심되는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진단법(Polymerase Chain Reaction : PCR) 등 새로운 검사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병성감정 실시요령

## VII. 발병농장에 대한 세부방역 지침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면 농림부, 검역원, 지자체(시·도, 시·군), 가축위생시험소, 축주, 생산자 단체등은 돼지콜레라를 신속히 박멸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비상방역단을 조직할 수 있다.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는 긴급방역을 위하여 방역기간 동안 타 지역의 방역요원들을 일시적으로 지원 또는 동원할 수 있으며, 긴급 방역비를 책정, 지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돼지콜레라가 발생시 근절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임무와 역할은 별첨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역할분담”을 참고로 한다.

### 1.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로 오염된 농장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농장주에게 돼지콜레라의 발생사실을 알려주고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돈군들은 건강한 돈군과 즉시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염이 확실시되는 이환돈은 신속히 도태하여야 한다.
- 그리고 나머지 돈군은 종돈, 모돈, 후보돈 및 포유자돈 순으로 돼지콜레라 백신을 1 - 2주 간격으로 2회 추가접종(1두 1침 원칙준수)하도록 하고 분만자돈은 초유전 접종법을 철저히 실시한 후 40일간 검역을 실시하여 발병돈이 관찰되지 않으며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의 실험실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종식보고를 할 수 있다.
- 격리개시 시기에 살아있는 돼지의 수와 종류를 서식1에 따라 기록한다. 지자체는 즉시 보상이 필요한 돼지와 기타 물건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유주와 협의하도록 하고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 졌을 때 돈군의 교체시기와 기간을 결정한다. 돈군을 도태한 후에 청소 및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개 곤충을 구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돼지와 함께 사육하고 있는 동물들도 격리 검역하도록 한다. 만약 다른 돈사나 농장으로 이동하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돼지콜레라 종식통보 때까지는 이동을 통제한다.

### 2. 농장 검역(격리)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되었을 때 농장의 건물도 검역해야 한다. 질병이 확인된 날짜로

부터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검역조건 및 소독과 오염제거, 검사 등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감염농장은 아래에 언급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감염된 돈사들의 오염제거 확인을 위한 일상적인 검역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돈사내의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여 제거한 후 발병 돈군 유래의 모든 사체와 산물,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들은 완전히 소독 또는 소각을 실시한다.
- 발병 돈사는 최소 40일 동안 반복하여 철저히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 이상의 조치로 돈사에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제거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돼지콜레라 항체음성 자돈을 검역 돈사에 입식한 후 최소 40일 이상 사육하면서 재감염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3. 양돈장 또는 돈사의 안전조치

돈군교체, 도태, 보상 평가, 소독 등에 필요한 기간 동안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오염된 돈사는 매일 24시간 안전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이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 시장, 군수는 다음 절차를 수정해서 실시할 수 있다.

- 모든 출입구는 폐쇄 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출입구에는 돼지콜레라 발생사실 및 검역중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방역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농장 또는 돈사 출입자는 방역조치에 필수적인 사람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주의한다. 돈사 또는 출구에 기구, 장비, 차량 등의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비치해야 한다.
- 질병 방제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장입구 또는 돈사 출입구에 감시요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감시요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입은 인가된 사람만을 농장 또는 돈사에 출입하도록 해야 하며, 농장 또는 돈사를 떠나는 사람이 완전히 오염제거 조치를 했을 때 나가도록 허용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담당 감시요원과 협의하여 감염돈사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 감시요원은 오염된 농장이나 돈사로부터 모든 오염 가능한 동물 또는 물건들이 반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감시요원은 오염방지 조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이를 보고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 돈사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의하여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일시적인 웅덩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감염돈사는 외부뿐만 아니라 돈군 제거기간 동안 오염된 통로나 도로를 허용된 소독제(생석회 등)로 소독하도록 한다.
- 축주는 비감수성 동물(개, 고양이 등)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사 주위에 이들 동물이 배회하지 못하게 농장의 검역이 종료될 때까지 이러한 동물을 가두어 두어야 한다.

#### 4. 돼지콜레라의 확산 방지

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와 접촉 후에는 다른 돼지와 접촉을 피할 것

- 돼지콜레라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잠복감염된 돼지를 도입하므로써 흔히 이 병이 확산된다. 또한 병원체는 차량, 장비, 퇴비, 깔짚, 곤충 등에 부착되어 기계적으로 전파·확산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감염돈사에 출입한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에 의해서도 확산될 수 있다.
- 박멸조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감염돈사를 방문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감염돈사를 떠나는 사람에 대한 오염제거 절차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돼지콜레라 추적 조사팀은 발생농장 방문 후 농가 추적을 위해 매 농가 방문시 마다 반드시 오염을 제거하는 절차를 밟는다.

#### □ 돼지콜레라와의 접촉유형과 대책

접촉 유형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와 공급품의 배달, 표본채취</li> <li>○ 돼지콜레라 감염의심 농장의 건물내 출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욕 후 세탁된 옷을 갈아입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콜레라 감염 돼지가 있는 시설과의 직접접촉</li> <li>○ 돼지콜레라 조사활동, 실험실 검사를 위한 재료의 채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된 의복을 소독한 후 목욕하고 세탁된 옷으로 갈아입는다(1일간 출입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 또는 노출된 돼지, 폐사체, 돼지 부산물, 오염된 물건 또는 시설과의 직간접 접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지역을 벗어날 때는 모든 옷은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함(3일간 출입금지)</li> </ul>

## 나. 개인적인 오염 방지

돼지콜레라가 의심되거나 오염된 시설에 출입할 때는 보호의복(Protective clothing)을 착용해야 한다.

## 다. 검역 및 감시 지역

- 시장, 군수는 감염위험지역을 설정하도록 한다. 감염 위험지역은 발병 정도와 자연적인 장애물(강 또는 산 등)에 따라 발병 농장에서 최소한 반경 2km를 포함시켜야 하며 질병의 확산정도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시군 또는 지역 전체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 만약 돼지콜레라의 확산이 진행된다면 감염위험지역도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들이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확인되면 감염위험지역을 점차 축소할 수 있다. 감염위험지역은 지도에 표시해야 하며 그 지역에 관계된 정보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감염위험지역의 구분을 도로로 정하였을 때는 도로에 경계표시를 하도록 한다.
- 방역상 필요시에는 감염위험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경 약 2km 정도의 경계 지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경계지역 설정시에도 자연적인 장애물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박멸 및 감시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감염위험지역과 경계지역은 몇 개의 소구역들로 나눌 수 있다.
- 돼지콜레라 발생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염위험지역내의 모든 돈군들은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염위험지역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엄격한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 라. 검사 인력 및 실시요령

- 감염 위험지역의 검역 및 예찰 업무는 가축위생시험소 및 시, 군의 가축방역관이 실시하는 것이 좋다. 가축방역관은 책임지역 농장의 모든 돼지들을 10일 간격으로 관찰하고 필요시 정밀검사를 위한 재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또한 각 농장주들에게 방문 이유, 발병농장의 방역현황, 돼지콜레라의 특성 및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 각 농장을 조사할 때마다 서식 1에 따라 기록하고, 이전의 방문조사시와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돈사내의 모든 돼지들은 매 방문 때마다 돈사 복도를 걸어가면서 관찰하고 혹시 누워있는 돼지는 일어나서 움직이게 함으로써 간과

할 수 있는 비정상 소견을 관찰해야 한다. 돼지콜레라가 의심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들은 즉시 격리시키고 직장온도를 기록한 다음 즉시 보고체계와 방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 돼지콜레라 이환돈을 제거한 발병농장은 이 병이 종식될 때까지 매주 1-2회 모든 돼지들을 검사해야 한다. 가축방역관은 감염위험지역의 농장을 떠나기 전에 차량을 청소하고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사용한 의복과 기구 및 장비들도 농장을 나오기 전에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소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검사자의 차량에 청정부분과 오염부분을 각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한 한 농장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시키고 걸어서 방문한다. 농장에서 사용한 물품들은 소각하거나 비닐백에 밀봉하여 반출하면 편리하다.
- 경계지역의 검역업무도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해야 하며 경계지역에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예찰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 마. 감염 위험지역 검역의 해제

돼지콜레라 확산 위험이 제거되고 시장, 군수에 의해서 질병 종식에 따른 해제가 인가될 때까지는 검역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 지역에서 마지막 검역농장이 검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지역검역을 해제할 수 없다.

#### 바. 돼지와 돼지 부산물의 이동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돼지 또는 돼지 부산물, 즉 거름, 깔짚, 다른 폐기물 등이 어떠한 목적으로도 검역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농장에서 외부로 이동할 수 없다.

다만 아래 조건에 충족된다면, 발생농장내의 건강한 돼지콜레라 음성 돼지는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승인한 도축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 전체 돈군의 임상검사 결과 가축위생시험소장이 건강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서식1에 따라 허가서를 첨부하여 도축장으로 이동을 허용하며 각 개체는 이표를 달거나 어깨에 적색 표시 또는 문신을 해야 한다.
- 돼지 이동에 사용한 차량은 청소 및 철저히 소독을 실시한 후 사용한다.
- 이동 차량은 이동시에 봉인하거나, 차량에 가축방역 담당자가 동승해야 한다. 봉인은 도착지 도축장의 축산물 검사원 및 동승한 가축방역담당자만이 해제할 수 있다

## VIII. 역학조사

시, 군 및 가축위생시험소(필요시 검역원 포함)의 가축방역관은 질병의 진단, 전파 요인, 예방접종 상황 및 위험평가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돈군의 임상증상 및 질병전파와 관련 될 수 있는 각종 요인 등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돼지콜레라 최초 침입일 결정

돼지콜레라 최초 침입일은 농장내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제일 처음 침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이다. 이 날짜는 돼지콜레라 발생역학 조사결과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으며, 돼지콜레라의 잠복기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전파 특성과 일치해야 한다.

### 2. 돼지콜레라의 추적

#### 가. 추적의 필요성

- 돼지콜레라 발생 초기에 가축, 부산물 및 기타 관련 물건의 이동 상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적하는 능력이 이 질병을 조기에 박멸하는 열쇠이다.
- 오염된 수송장비, 물건 및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개체와 동거 돼지를 확인하고, 이들의 이동을 금지하여 더 이상 이 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돼지콜레라의 추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 지방정부에서 돼지콜레라 추적중에 시도 경계에 따른 관할지역 이 달라 추적이 곤란 할 때에는 즉시 중앙정부(농림부, 검역원)의 협조를 받아 인근 시도와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색출한다.
- 돼지의 이동에 관한 정보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해야 한다. 축주나 관리자와 차분하게 면담하여 간혹 간과할 수도 있는 돼지콜레라에 관련된 일들을 축주가 회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돼지콜레라 서식 1, 1-1, 1-2, 1-3을 사용하여 추적정보를 기록한다(부록 서식 참조).

## 나. 돼지 및 부산물

- 돼지콜레라로 확진되는 즉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대한 기계적 또는 생물학적 매개체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신규입식 돼지 및 기타 도입된 물건의 출처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 농장 밖에서의 이동 상황도 역시 추적하여야 한다. 돼지콜레라의 전파 위험성이 있는 돼지와 장비 및 물건 등이 농장 외부로 반출되었을 때 모든 행선지와 중간 도착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 출하차량에 대하여는 승하차 날짜 및 시간, 차량 소유주 또는 운전자의 성명, 행선지와 중간 도착지 등을 조사한다.

## 다. 트럭 운전사와 돼지 거래상인

- 트럭 운전사, 상인, 가축구매자 등이 돼지콜레라가 발병한 농장에 출입했다면 그들이 다른 농장을 방문하였는가에 대하여 즉시 조사한다. 돼지콜레라와 접촉한 이후 최소한 3일 간의 일정을 추적한다.
- 상세하게 기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방문했던 또는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농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 전파 위험이 있는 돼지의 개체확인(품종, 일령)
  - 트럭기사, 상인, 구매자등이 수행한 서비스 형태
  - 그리고 청소 및 소독방법(사용된 것이 있다면) 등
-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각 농장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축주나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들 농장에 있는 돼지는 그후 4주간 계속 발병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라. 집합장소

- 경매장이나 비육돈 구매업자가 모이는 곳과 같은 집합장소로 부터의 이동에 대한 확인 및 추적절차들은 오염된 농장에 대한 절차들과 동일하다.
- 비육돈 구매자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었거나 노출된 농장들로부터 돼지를 구입해서 다른 농장들로 판매했을 때 돼지콜레라를 전파시킬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에

게 돼지를 공급하였거나 이들로부터 돼지를 구입하였던 모든 농장들을 확인하고 돼지 콜레라의 전파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 집합장소 내외로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자료처리에 포함시켜야 할 날짜를 결정한다(최초 침입 일자와 관련).
  - 누가 관련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빠른 시간 내에 기록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확보한다.
  - 자료처리 작업을 할 장소를 결정한다.
  - 기록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한다. 이러한 절차들은 사정에 따라서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 자료처리를 위해 사건이 일어난 일련순으로 모든 유용한 기록들을 취합한다.
  - 각각의 기록을 점검하고 모든 이동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사람을 지명한다.
  - 돼지콜레라 발병지역 밖으로의 이동에 관해서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 도지사는 해당 시, 도에 통보하여 해당지역에서 알 수 있도록 한다.
  - 집합장소의 모든 구매자, 판매자, 방문객 그리고 고용인의 주소목록을 경영자로부터 얻어야 한다.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돼지콜레라 전파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등에 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
  - 질병전파에 관여했을 지도 모르는 집합장소에 있는 모든 수송수단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수송수단을 추적하고, 확인된 경우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빌려온 모든 기록 대장들은 똑같은 순서와 상태로 빌려준 사람에게 되돌려 준다.

#### 마. 농장 써비스맨

- 농장 써비스맨 즉 사료공급자, 가축약품 판매상 등은 돼지콜레라로 의심되기전에 무심코 감염농장을 출입한 후 다른 농장을 방문할 수 있다. 농장 써비스맨이 감염농장을 방문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시 연락해 주어야 한다.
- 감염농장에 도착한 이후의 그들의 이동에 관하여 상세하게 추적한다. 추적 내용에는 감염위험이 있는 농장의 주소 또는 위치 그리고 방문 당시 수행했던 일의 종류, 사용한 장비, 그리고 농장을 떠나기 전에 사용했던 소독과정을 포함시킨다.
- 최초 발병농장에서 그후 연속 3일간 그들이 방문했던 모든 농장의 목록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 바. 수의사

- 감염농장의 역학조사 중 공개업수의사가 돼지콜레라 전파에 연관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수의사의 이동을 추적하고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었을 지도 모르는 농장주에 대해서 관련된 수의사로 하여금 돼지콜레라 예방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돼지콜레라와 임상적으로 유사한 질병에 관하여 식견이 있는 수의사라 할지라도 돼지콜레라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한 돈군에 돼지콜레라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 잠복감염상태의 돼지와 접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돼지콜레라의 발병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지역의 모든 수의사에게 돼지콜레라 발생과 전파의 위험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돼지콜레라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방역사업단을 활용하도록 한다.

## 사. 도축장

- 돼지콜레라에 감염 또는 노출된 돼지를 도축했던 도축장에 출입한 가축수송 차량 및 사람 등을 추적하는 것은 돼지 집합장소에서 언급한 과정과 비슷하다.
- 우선 도축검사원의 협조를 받아 이동을 추적할 날짜들을 결정해야 한다. 도축장을 출입한 사람은 돼지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돼지 중간상인과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수출을 위한 수송시에는 즉시 검역원(지원)에 보고하여 수출입관리자에게 경계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즉시 추적해야 할 돼지고기 산물의 이동 목록에는 신선, 냉동, 냉장 돈육 또는 기타 가공하지 않은 부산물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 아. 잔반 급여 농가

-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고기 및 부산물을 포함한 잔반 급여는 돼지콜레라의 주요 전파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 첫 증상이 관찰되기 전 최소 2 주 동안 감염된 농장으로 들어온 잔반이동 상황을 추적하고 관련된 농장을 확인하여 타 농장에도 돼지콜레라가 전파되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 IX 살처분 도태 및 보상

### 1. 동물의 살처분

○ 긴급 상황에서 수행되는 살처분 작업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9조에 따라 실시하고 인사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 살처분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살처분은 시군 및 가축위생시험소의 가축방역 담당공무원의 감독하에 수행하며, 매몰 또는 소각하기 전에 돼지가 반드시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 살처분은 전기도살법이나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전기도살법 시행시에는 인근 가축위생시험소 또는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도살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사용되는 약제는 Succinylcholine chloride 등이 있다

※ Succinylcholine chloride 용액 제조 및 사용방법

가. 증류수 또는 광물질이 적은 수돗물 100ml에 10g의 Succinylcholine chloride를 용해한다.

나. 결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흔들어 준다. 만든 후 24시간 이내 사용한다.

다. 안전을 위해서 돼지를 적절하게 보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 안전장치가 있는 30ml짜리 연속주사기를 사용한다.

마. 90kg당 돼지에 권장 접종량은 5ml이며 근육 접종한다.

바. 약 5분이 경과되면 돼지가 근육이 이완되고 질식하여 폐사한다.

#### < 주의사항 >

이 약품을 사용할 시에는 사고로 사람에게 투여할 때를 대비하여 인공호흡법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이 동참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약은 근육이완제로서 외과수술에서 흔히 사용된다. 사람에게 2ml이상 투여시에는 고통이 생기며 3-6ml 투여시 심한 부작용이 생긴다. 이 약은 체내에서 신속히 가수분해 된다. 호흡이 중지되면 자연호흡이 재개될 때까지 신속히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2. 살처분 장소

가능한 한 해당 농장에서 실시하도록 하되 여건에 따라 매몰장소에서 살처분 할 수도 있다.

## 3. 매몰 및 소각

### 가. 매몰

- 매몰 장소 선정시 시,군 가축방역담당자는 해당지역의 환경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여 수질오염 등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매몰방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실시한다.

### 나. 소각

- 사체를 소각하는 것은 노동 및 재료 측면에서 힘들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소각은 물 또는 바위가 많은 지역 또는 상수원 보호지역 등 매몰이 불가능 할 때만 사용한다.
- 소각 전에 지역 환경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소각 방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한다.

## 5. 보 상

### 가. 보상평가반의 구성

- 돼지콜레라 감염이 확인된 모든 돼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동시행령 제 3조와 농림부 고시 제1988-10호의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살처분보상 평가를 실시한다.
  - 살처분 돼지에 대한 보상금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위하여 평가반장은 살처분을 위해 돼지콜레라로 진단이 내려진 후 가능한 한 빨리 감염농장에 대한 평가반을 구성한다.
- ※ 평가반이 평가를 끝내고 농장을 떠날 때는 평가반원에 대한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감염 돈사의 모든 돼지에 대한 평가가 끝난 후에 돼지 또는 물건 등을 파기하고, 소유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다. 만약 농장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나. 보상금의 지급 신청 및 처리 절차

- 살처분 등의 가축소유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다(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령 제7조, 제8조)

신청인	경유 기관	처리 기관
신청서 ⇔	시·군·구 ⇔	농 립 부 예산신청 ↑ ↓ 예산재배정 시.도(접수 및 확인)

## X. 소독 요령

### 1. 돈사 및 돈사내 물건에 대한 소독

- 돼지콜레라로 오염된 돈사의 소독은 가축위생시험소 담당공무원과 상의하여 농장주가 실시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와 제5조 참조)

### 2. 오염된 건물의 소독방법

- 모든 오염된 건물은 청소 후 소독을 실시해야한다. 자동급이기 및 다른 밀폐된 부분이 적절하게 소독되었는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오염된 돈사내의 모든 깔짚, 사료 등을 제거한 후 매몰 또는 소각해야 하며 소각 또는 매몰할 수 없는 것들은 생석회와 혼합하여 소독한 후 폐기하도록 한다.
- 돈사 내외부를 소독하기 전에 반드시 청소 및 세척을 잘하여 거의 모든 오염물질 또는 이물들을 표면에서 제거해야 한다. 소독제는 거품, 건조혈액, 다른 유기물질을 수 mm 이상 침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청소가 완전히 끝났을 때 건물의 내외부에 인가된 소독제를 강력한 분무장치를 사용하여 모든 표면과 갈라진 틈 사이로 스며들도록 충분히 분무하는 것이 좋다.
- 콘크리트 같은 불침투성 표면은 허가된 소독용액으로 완전히 적셔 준다.
- 다량의 건초, 짚, 곡물 등이 저장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오염정도와의 이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 감염농장을 출발하는 트럭이나 다른 중장비의 청소 및 소독을 위한 장비들은 각 감염농장의 출구에서 충분히 소독하여야 한다.

### 3. 운반수단에 대한 소독절차

- 질병발생 기간동안 감염 또는 오염된 것들을 수송했던 모든 트럭과 다른 운반수단들은 다시 사용하거나 외부로 이동시에는 이동 전에 반드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 운반수단에 대한 소독절차는 건물에 대한 소독절차와 동일하다.
- 내외부, 모든 구석, 갈라진 틈을 철저히 청소한다.
- 승용차의 내부는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모든 표면을 소독제로 닦아낸다.
- 차량에서 제거한 거름, 깔짚은 오염 돈사의 거름처리 방법과 같이 처리한다.

#### 4. 소독제

- 어떤 공인된 소독제를 선택하는 것은 몇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며 가축위생시험소의 가축방역관과 상의해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제 6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참조). 이러한 요소로서는 소독해야 할 표면의 유형, 온도, 기후조건, 특정 약제의 효과, 소독제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불활화 시키는데 요구되는 시간 등이 포함된다.
- 주의사항
  - 돈사 및 돈사내 기구와 주택 기계류 운송수단을 위에 제시된 소독제로 소독한다.
  - 상표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따른다.
  - 세제가 사용된 모든 표면은 깨끗한 물로 철저히 행구어낸 후 소독제를 사용한다.
  - 하나의 소독제와 다른 소독제를 혼합하지 않는다.
  -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소독제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눈, 코, 입, 피부 등을 보호하는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 5. 최종 검사

가축위생시험소의 가축방역관은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질병종식 유무를 확인한 후 이동 제한을 해제하기 이전에 살처분 및 소독이 만족스럽게 수행되었다는 것을 인증해 주어야 한다

# XI.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

## 1. 사냥 지역

돼지콜레라 박멸 기간동안 멧돼지가 서식하는 지역에서의 사냥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가축 시장

가. 돼지를 취급하는 가축시장, 경매장 등은 판매과정을 마친 후에 모든 돼지를 비워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폐사체 및 배출물에 대한 폐기장소 운영
- 사체처리, 청소, 소독에 사용되는 장치들의 확보
- 돈사소독에 필요한 소독약 및 소독방법 준수
- 지정된 출입지점의 교통통제에 대한 안전조치 확보
- 가축시장 감독자, 고용인, 축주에 대한 돼지콜레라 박멸 프로그램 숙지

나. 가축 시장에서 돼지콜레라가 의심될 때의 조치 사항

- 의심 돼지가 있는 돈사, 돈군을 격리하고 주변지역 청소 및 소독실시
- 의심 또는 노출된 돼지의 이동제한 명령
- 환축 또는 폐사돈을 병성감정 실시기관에 진단의뢰
- 오염된 운반 수단을 청소, 소독 및 오염 돈사의 출입제한
- 모든 돼지의 이동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 및 추적조사 실시

다. 가축시장에서 돼지콜레라가 진단되었을 때의 조치사항

- 가축 시장의 폐쇄
- 시장출입구에 모든 운반수단을 소독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고 박멸 프로그램에 따라 조치(발생 농장의 조치사항 참조)

## 3. 도축, 가공 및 저장시설

가. 도축장에서 돼지콜레라가 의심될 때

○ 돼지콜레라 감염돈이나 의심돈을 제거하고 작업장 내부의 오염 의심지역을 소독 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한다.

○ 돼지콜레라감염 의심돈의 고기 및 부산물은 도축검사원의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나. 돈육가공공장에서 돼지콜레라가 확인되었을 때의 조치사항

○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한다.

○ 돼지콜레라 감염돈육의 적절한 처리 및 사람, 기구 등을 소독한다.

○ 가축위생시험소장에게 사체 및 산물 등의 처분결정을 위한 모든 관련 된 정보를 제공한다.

○ 청소 및 소독완료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4. 동물원

○ 동물원의 동물들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저항성이 있지만 일부 동물원은 가축용 폐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동물원 책임자에게 돼지가 죽거나 병든 것을 보고하도록 홍보한다.

#### 5. 사 료

○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 남아있는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폐기하도록 한다.

○ 사료가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감시돈에 먹여 봄으로써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후 사료를 동일 농장의 돼지에만 급여 한다.

#### 6. 개, 고양이, 파리, 모기 및 설치류

○ 돈군교체와 돈사의 청소 및 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돈사내의 개와 고양이는 돼지와 돼지사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청소 및 소독이 시작되면 농장내의 설치류는 사료를 찾아 인근 농장으로 이동하여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기계적인 전파자(vector)가 될 수 있으므로 구서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집파리 및 모기도 기계적인 전파를 할 수 있으므로 구충을 철저히 해야한다.

### 7. 생물학적 제제, 약물치료 , 약제

- 돼지콜레라 발병농장의 생물학적 제제, 약품은 돼지콜레라 오염으로 간주 비감염 농장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 감염농장 돼지 제거 후 개봉하지 않은 약제의 처리는 가축방역관의 결정에 따른다.

### 8. 전람회(박람회)

- 돼지콜레라 발병 기간동안 출품회, 전람회 등에 돼지 출품을 금지시킨다.

### 9. 백신접종

- 생독백신 접종은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제1단계에서만 실시하고 제2단계부터는 접종을 금지한다.

#### 돼지콜레라 표준 백신접종프로그램

접종방법	접종대상	1차접종	2차접종	보강접종	접종경로
자돈접종법 (평상시)	이유자돈	생 후 5-6주령	생 후 8-9주령	매년1회	근 육
자돈접종법 (인근발생시)	이유자돈	생 후 4-5주령	생 후 6-8주령	매년1회	근 육
포유전 접종법 (발생농장)	무포유 신생자돈	포유전	-	매년 1회	근 육
모돈(성돈) 접종법	모 돈	중부 2-4주전 1회		매년 1회	근 육

## XII.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환경 저항성

감염재료 및 감염부위	노출(저장)조건	생존기간
혈액	자연조건(37.5 °C, pH 5.2) -20 °C 냉장건조상태 4 - 8 °C 부패된 혈액이나 흙속에 매몰된 장기내 실온 페놀처리(0.5 %)-냉장상태	8일 270일 180일 이상 720일 이상 7 - 14일 90일 이상 100일 이상
눈물 및 비루	10 - 18 °C	2일 이상
돼지 뇨	실온 아이스박스내	21일 이상 23일
사체	냉장고 여름에 매장된 상태 겨울에 매장된 상태 초저온냉동고(-70 °C)	95일 이내 7일 이내 수개월 226일 이내
오염된 축사	더운 날씨 완전하게 청소 및 소독된 상태	1 - 7일 미만 14일 미만
배설물 및 깔짚		28일 이상
식육(meat)	냉장상태 -11 °C	33일 이상 4년이상
말린고기, 식염처리 및 절인 고기		73일 이상
돼지고기(pork)	-10 °C -10 ~ -3 °C	4년 이상 73일 이상
근육	염지	95일 이하
햄	염지	84일 이상
폴수	3.3 °C	55일 이상
소시지		180일
베이컨		27 - 57일
casings	실온	86일 이하
림프절	동결상태	9년이상
피부	4 °C	33일
혈청 알부민	140 - 160 °C 유입공기 및 70 - 80 °C 유출공기로 분사건조된 상태	1,095일 이상
부패된 장기		4일 미만

### XIII. 관련법규 및 고시

##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

제정 농수산부 고시 제2389호	(1975. 12. 27)
제정 농수산부 고시 제2680호	(1975. 8. 1)
제정 농림수산부 고시 제87-46호	(1987. 8. 25)
제정 농림수산부 고시 제89-46호	(1989. 8. 1)
농 립 부 고시 제1997-31호	(1997. 5. 2)
농 립 부 고시 제98-10호	(1998. 3. 2)

제1조(목적)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살처분한 가축, 소각 매몰한 물건등(이하“살처분가축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살처분가축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과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도태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지급대상)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약육·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은 동물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동물의 태아
2.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역·우폐역·구제역·비저·광견병·아프리카돼지콜레라 또는 돼지콜레라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살처분한 가축
3. “결핵병및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한 소
4.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한 돼지
5. “추백리방역실시요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살처분한 종계(다만, 동요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결과 양성발생율이 확인검사 마리수의 1%이상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기타 법 제2조의 가축전염병 및 법 제38조의 가축전염성질병중 농림부장관이 가축 방역상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살처분한 가축

7. 법 제14조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우유·계란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 제3조(보상금지급요율)①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요율은 별표 1과 같다.
- ②제1항의 보상금지급요율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서 정한다
1. 제2조제3호내지 제5호에 해당되어 살처분한 가축의 경우 :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충청북도는 농축산사업소장, 전라남도는 축산기술연구소장,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원장, 제주도는 축산진흥원장을 말하며 이하“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해당되어 살처분한 가축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군수가 관할 시험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제1항의 보상금지급요율을 정한 시험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요율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①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2와 같다.
- ② 서울특별시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시 제1항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한 지급요율의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보상금평가반)①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상금평가반(이하“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인이내에 반원으로 구성한다.
- ③ 평가반장은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 소속 관계자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자가 된다.
1.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을 취급 또는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자
  3.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충청

북도는 농축산사업소, 전라남도는 축산기술연구소,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원, 제주도는 축산진흥원을 말한다)의 가축방역관

4. “공동방역사업실시단운영요령(농림부훈령 제882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사업단원(공동방역사업실시단을 설치한 시군에 한한다)

제6조(보상금의 결정등)①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반원으로 위촉된 평가인 3명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 평가반장은 평가시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살처분가축등의 산지거래가격·도매시장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제2호서식에 의한 보상금평가서를 발급하고 살처분 가축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 평균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보상금지급신청)① 살처분가축등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가축전염병시행규칙 별지 제1호내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사·주사·약육·투약 증명서(제2조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2. 가축전염병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살처분명령서 사본(제2조제2호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3. 추백리방역실시요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험소장의 확인검사성적(제2조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지사에게 당해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확인서(일시·실시장소·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실시방법·소각 및 매몰두수 기재)
2.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요율 결정서 사본
3. 제2호서식에 의한 보상금평가서 사본

제8조(보상금의 지급)제7조제3항에 의거 군수로 부터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진달받은 도지사는 보상금지급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와 동시에

시도에 재배정된 보상금예산으로 살처분가축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가축의 조기도태 및 장려금 지급대상) ①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부루세라병 및 돼지오제스키병의 전파를 차단 하고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을 조기에 도축장으로 출하·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호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이하“도태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루세라병검사 결과 이환소 발생농장에서 이환소와 함께 사육한 소중 조기 도태할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소
2.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혈청 검사 양성모든중·조기도태할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든

② 도태장려금의 지급기준액은 별표3과 같다

③ 도태장려금 지급대상 가축의 소유자는 관할검사기관으로부터 부루세라병 또는 오제스키병검사 결과를 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축장으로 출하·도태하여야 하며, 출하예정일 3일전까지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자에게 출하지역·일시 등 계획을 통보하여 해당가축 출하시 입회·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도태장려금지급 신청 등) ①도태장려금 지급 대상가축의 소유자는 해당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도태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도태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농장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증명서(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에 의한 검사카드사본 또는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통보서 사본등)
2. 시·군·구의 가축방역담당자가 입회·확인한 도태 대상가축의 도축장 출하확인서(소유자의 주소·성명·농장명 및 도태출하일시·두수·출하도축장명과 소입신여부·나이 기재)

3. 도축검사신청서 사본

② 제1항의 도태장려금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가축의 도태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도지사에게 당해 신청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군수로부터 도태장려금지급 신청서를 전달받은 도지사는 시도에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 또는 시·도자체예산으로 도태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

금을 지급하고, 별지제6호 서식에 의거 도태장려금 지급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지급업무등의 확인) 농림부장관은 살처분가축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장려금 지급업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상금과 도태장려금 지급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평가액의 상한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등의 실시로 인하여 가축이 폐사하거나 가축의 태아가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와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의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농림수산부고시 제89-46호(1989. 8. 1)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상금지급요율(제3조제1항 관련)

1. 신고에 의한 경우

가. 적용대상질병 : 우역, 우폐역, 구제역, 비저, 광견병,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및 기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나. 보상금의 범위

지 급 요 율	평 가 기 준
1. 평가액의 전액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이나 나타나기 전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평가액의 5분의4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3. 평가액의 5분의3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4. 평가액의 5분의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고의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지체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가축 방역관이 해당 가축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경우

## 다. 확인방법

- (1) 신고시점의 확인 :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제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신고대상기관(시·군·구·동·읍·면장·공개업수의사)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 (2) 발병시점의 확인 : 공개업수의사등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 “가축질병병성감정 실시요령 농림부훈령 제795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관의 병성감정대장, 가축전염병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등과 질병피해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 2. 검사에 의한 경우

가. 적용대상질병 : 우결핵, 소부루세라병, 돼지오제스키병, 추백리

나. 보상금의 범위

지 급 요 율	평 가 기 준
1. 평가액의 전액	<p>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다음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p> <p>① 당해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과거의 검사 성적(결핵병및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에 의한 가축전염병검사카드,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에 의한 오제스키병검사증명서, 추백리방역실시요령에 의한 추백리검사 성적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 예방접종(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대장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 및 이동사항에 관한 정확한 기록의 유지</p> <p>② 가축을 붙잡아 매는 시설등의 실시</p> <p>③ 축사의 세척·소독이나 가축의 계류등 가축방역관의 검사 업무수행에의 협조</p> <p>④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이동 제한·격리등의 명령과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등의 이행</p>

지 급 요 율	평 가 기 준
2. 평가액의 5분의4	<p>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다음의 4개조치중 ④를 포함한 3개조치를 이행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당해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과거의 검사 성적, 예방접종 및 이동사항에 관한 정확한 기록의 유지</li> <li>② 가축을 붙잡아 매는 시설등의 설치</li> <li>③ 축사의 세척·소독이나 가축의 계류등 가축방역관의 검사 업무수행에의 협조</li> <li>④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이동 제한·격리등의 명령과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등의 이행</li> </ol>
3. 평가액의 5분의3	<p>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다음의 4개조치중 ④를 포함한 2개조치를 이행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당해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과거의 검사 성적, 예방접종 및 이동사항에 관한 정확한 기록의 유지</li> <li>② 가축을 붙잡아 매는 시설등의 설치</li> <li>③ 축사의 세척·소독이나 가축의 계류등 가축방역관의 검사 업무수행에의 협조</li> <li>④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이동 제한·격리등의 명령과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등의 이행</li> </ol>

4. 평가액의 5분의2	<p>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다음의 4개조치중 1개조치만을 이행하거나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① 당해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과거의 검사 성적, 예방접종 및 이동사항에 관한 정확한 기록의 유지</p> <p>② 가축을 붙잡아 매는 시설등의 설치</p> <p>③ 축사의 세척·소독이나 가축의 계류등 가축방역관의 검사 업무수행에의 협조</p> <p>④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이동 제한·격리등의 명령과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등의 이행</p>
--------------	---

### 3. 기타의 경우

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약육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폐사한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한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검사·주사등의 실시 당시 당해 가축 및 가축태아의 평가액의 5분의 4를 지급한다.

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 당해 물건평가액의 5분의 2를 지급한다

【별표 2】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제1항 관련)**

1. 살처분한 가축

(단위 : 원)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젖 소	초유떼기	280,000		
	분유떼기	389,000		
	수정단계	1,041,000		
	초임만삭	1,897,000		
	초산우	1,560,000		
	초산우(임신만삭)	1,760,000		
	다산우(2~5산)	1,107,000		
	다산우(임신만삭)	1,307,000		
	노산우(6산 이상)	743,000		
육 우	300kg 미만(kg당)	암	2,791	
		수		
	300kg 이상(kg당)	암	2,514	
		수		
한 우	송아지(4개월미만)	암	840,000	
		수	1,092,000	
	200~299kg(kg당)	암	5,017	
		수	5,608	
	300kg 이상(kg당)	암	4,534	
		수	4,830	
돼 지	자 돈(30kg 이하)	49,000		
	육성돈(31~60kg)	90,000		
	성 돈(61kg 이상, kg당)	1,500		
	돼지오제스키병 항체 양성모돈	250,000		
개	성 견	100,000	어린개는 시가평가액 지급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닭	초생추	700	
	종 계		
	- 산란용(21주령 기준)	12,250	
	- 육 용(28주령 기준)	10,000	
	종 계(70주령 이상)	1,400	
	실용계		
	- 육 용	1,300/kg	
	- 산란용(21주령기준)	3,500	
- 산란용(78주령이상)	600		
종 란	350		
종란을 제외한 알	70		

비고1. 돼지오제스키병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종모돈은 성돈의 상한가격 적용

비고2. 종계와 산란실용계의 단계별 가격 산정

가. 산란용종계

- 초생추~21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1주령이상~70주령미만 : 2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나. 육용종계

- 초생추~28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8주령이상~70주령미만 : 28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다. 산란실용계

- 초생추~21주령 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환산
- 21주령이상~78주령미만 :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환산

비고3. 종계 및 종란기준

가. 종 계 : 축산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한 씨암탉과 씨수탉

나. 종 란 : 종계에서 생산된 알

## 2. 가축의 태아,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평가반에서 처분당시의 시세를 감안하여 상한가격을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보상금지급요율 결정서

가축등 소유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발 생 농 장	④ 소 재 지			
	⑤ 농 장 명		⑥ 축 종	
	⑦ 사육두수		⑧ 발생전염병명	
	⑨ 발생두수		⑩ 폐사두수	
			⑪ 살처분두수	
지 급 요 율	⑫ 지급요율			
	⑬ 지급요율결정 근거 :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율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요율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

군수 } (인)  
도 가축위생시험소장

○ ○ 군(시·구) 보상금평가반장 귀하

274-09211일  
'97. 4. 24 승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별표 3】

도태장려금 지급기준

(단위 : 원/두당)

축종별	구 분	도태장려금 기준액	비 고
젖 소	송 아 지	200,000	6개월령이상에 한함
	초임만삭	500,000	
	초 산 우	400,000	
	다산우(2-5산)	300,000	
	노산우·기타	200,000	
돼 지	모 돈	100,000	축산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한 모돈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 보상금지급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신청금액								
⑤ 신청사유								
⑥ 보상구분		살처분가축 · 죽은동물 · 유사산태아 · 소각매몰물건						
⑦ 세부내용								
축종	품종	개체번호	성별	연령(산자수)	생체량	평가액	신청액	비고
계								
살처분	⑧ 일시							
	⑨ 장소							
⑩ 소각 또는매몰방법								
⑪ 이용물의 종류 및 수량								
⑫ 이용물의 공제액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계좌 :

시 · 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 ① 검사·주사·약육·투약증명서(제2조제1호의 경우에 한함)
- ② 살처분명령서사본(제2조제2호내지 제6호의 경우에 한함)
- ③ 소각·매몰 확인서(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 ④ 보상금지급요율 결정서 사본(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 ⑤ 보상금평가서 사본(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274-09411번  
'97.4. 24 승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div data-bbox="167 450 358 51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신청서</div> → ←	<div data-bbox="498 450 688 51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시·군·구</div> → ←	<div data-bbox="842 450 1211 51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시·도</div> 접수 및 확인 예산신청 ↓    ↑ 예산 재배정 <div data-bbox="842 614 1052 67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농림부</div>

살처분등 보상금지급결정 결과보고서

1. 관련문서번호 :

2. 보상금지급대상자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3. 보상금 지급내역

축종	전염병명	지급두수	지급액	지급요일	살처분일시	살처분방법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 도지사(특별·광역시장) (인)

농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 사본





【별지 제6호 서식】

## 도태장려금지급결과보고서

1. 관련문서번호 :
  
2. 도태장려금 지급 대상자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3. 도태장려금지급 사유 :
  
4. 도태장려금지급 내역 :

축종	품종	지급두수	지급액	지급일	출하도축장명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태장려금을 위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 도지사       (인)

농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별지제5호 서식에 의한 도태장려금지급 신청서 사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수송차량등에 대한 소독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 2. 2.

농 립 부 장 관

### 가축수송차량등에대한소독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수송차량등에 대한 소독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여 축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독시설 설치대상등) ①가축수송차량등에 대한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축장·도계장등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2.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조성한 축산단지(돼지 또는 닭을 기르는 축산단지에 한하며, 이하 같다)
3.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사육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가축시장 등

②도지사는 제1항의 소독시설 설치대상자에게 법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설비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차량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업장에 출입하는 가축수송차량 (이하 “가축 차량”이라 한다)

2. 축산단지에 출입하는 가축·사료·동물약품·달걀·축산기자재·축산분뇨 운반 차량과 동물진료차량(이하 “기타차량”이라 한다)

3. 어리장(가금수송용기)

제3조(실시장소) ①가축차량 및 어리장(이하“가축차량등”이라 한다)의 소독은, 차량 소독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한다

②도지사는 관할 작업장의 소독시설이 부족하여 가축차량등에 대한 소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차량소독시설을 갖춘 가축시장등을 차량소독실시 장소로 지정하여 소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소독시기등) ①가축차량등과 기타차량의 소독실시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차량등 : 가축을 내린직후에 실시한다.

2. 기타차량 : 축산단지의 소독시설에서 축산단지 진입시에 실시한다.

②작업장경영자 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차량소독실시 장소로 지정받은 자 (이하“소독시설경영자”라 한다)는 가축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 후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차량소독실시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원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운전자는 가축사육농장 또는 가축시장에 도착할 때까지 발급받은 차량소독실시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축차량의 운송업자에게 소독을 명하거나 가축방역관·또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전항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독방법) 가축차량등과 기타차량에 대한 소독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소독시설 설비) 소독시설 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차량을 세척할 수 있는 세척장비(고압세척기를 포함한다)

2.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장비(소독약품을 혼합시킬 수 있는 소독약 보관탱크를 포함한다)

3. 어리장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세척·소독장비(도계장에 한한다)

4. 수질오염방지지설 (작업장에 수질오염방지지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지설로 인입시키는 연결배관으로 같음할 수 있다)
5. 기타 도지사가 가축차량등의 소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비

제7조 (소독실시비용의 징수) ①소독시설 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가축차량 및 기타차량의 소독실시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차량세차비 (자동차등 운수장비 세차시설의 세차요금에 준한다)
2. 소독약품비
3. 수질환경보전등을 위한 공해방지 경비

②도지사는 차량소독실시비용의 적정징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비용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차량소독실시증명서 확인등) ①가축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소독실시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농장내 진입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농장경영자는 가축차량운전자가 제시한 차량소독실시증명서의 발급일자 등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차량소독실시증명서가 허위로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증명서에 자기농장에서 해당 차량에 상차한 가축마리수와 상차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작업장경영자는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차량소독실시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가축차량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 (소독관련 규정 위반시 제재) 도지사는 본 요령에 의한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과 축산단지 경영자,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가축을 수송하는 차량의 운송업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부 칙

이 고시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소독관련 규정 위반시 제재)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 가축차량 및 기타차량에 대한 소독방법과 소독약제

### 1. 소독방법

구 분	소 독 방 법	비 고
가축차량등	1. 반드시 오물을 제거하고 세차를 실시한 후 소독을 실시한다. 2. 차량전체를 소독하되 차량의 바퀴를 포함한 하부, 측면, 상부와 적재함이 적실정도(분무 입자 100~200nm 정도)로 한다.	
기타차량	차량전체를 소독하되 차량의 바퀴를 포함한 하부, 측면, 상부와 적재함이 적실정도(분무 입자 100~200nm 정도)로 한다.	
어리장 (도계장에 한함)	반드시 차량에서 분리세척하여 오물을 제거한 후 소독하되 어리장이 적실정도(분무입자 100~200nm 정도)로 한다	

### 2. 소독약제

석탄산수, 포르말린수, 크레졸비누액, 크레올린수, 크레신수, 가성소다등 알카리수제, 올소페실페니산 나트륨 용액, 4급 암모늄제, 이산화염소제 및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독약제

[별표2]

## 소독관련 규정위반시 제재 조치기준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조치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조치 기준은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위 반 횟 수 별 조 치 기 준		
		1회	2회	3회 이상
1.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는 작업장 및 출사다지 가.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나.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다지 다.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축시장등	법제7조 및 제44조	경고	과태료 50만원	과태료50만원
	법제7조 및 제44조	주의	경고	축산정책자금 지원배제
	법제7조 및 제44조	경고	과태료 50만원	과태료50만원
2.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명령에 불구하고 세척·소독을 하지 아니하는 가축차량의 운송업자	법제6조 및 제44조	경고	과태료 30만원	과태료50만원

농림부 고시 제1999-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 3. 5.

농 립 부 장 관

##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및 닭의 소유자에게 각각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과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돼지콜레라의 경우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한다)로 한다.
2. 뉴캐슬병의 경우 : 전국의 부화장에서 부화되는 병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부화장의 소유자등으로 한다.

②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돼지 사육시설에서, 뉴캐슬병 예방접종은 부화장에서 각각 당해 예방약의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뉴캐슬병의 2차 예방접종과 수입 병아리에 대한 예방접종은 당해 병아리를 입식한 소유자등이 실시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유자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공동방역사업실시단 또는 공수의료 하여금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하거나 해당 지역의 양돈·양계 등 생산자단체에게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한 사업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실시기간)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 실시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예방접종실시대장 등)①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등은 그 결과를 돼지콜레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에, 뉴캐슬병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축을 판매 또는 분양한 때에는 가축운반업자(돼지 수집상, 식육 판매업자, 식육가공업자, 도축업 영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또는 농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화장의 경우 병아리 수송상자에 예방접종 내역과 2차 예방접종 예정일 등을 표시하여 출하하는 때에는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한 소유자 등은 교부일부터 1년간 예방접종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 공동방역사업실시단의 사실확인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접종 확인·지도감독)①도지사는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 공동방역사업실시단으로 하여금 관내 돼지 사육농가 및 부화장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닭의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을 찾아낸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의 확인은 서류검사 또는 혈청검사 방법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며, 혈청검사는 서류검사만으로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 및 예방접종확인서
2. 공동방역사업실시단운영요령(농림부 훈령 제882호, '96. 12. 31)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
3.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교부한 수의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
4.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주사접종증명서

④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필요시 돼지 사육농가·부화장 또는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소유자등이 예방접종사실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최종판정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실시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 등) ①도지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처분한 도지사는 당해 소유자등의 돼지 또는 닭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원인이 발생한 시점(예방접종 미실시 확인일자)부터 25일이 경과한 후에 혈청검사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소유자등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방접종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유자등에게 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또는 국가방역용 약품 등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제7조(도축장 출하 돼지 조치)①가축운반업자 또는 소유자등이 도축을 목적으로 돼지를 출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돼지클레라 예방접종증명서류(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도축업 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축업 영업자는 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접종확인서
2. 제5조제3항제2호의 예방접종증명서
3. 제5조제3항제3호의 예방접종증명서
4. 제5조제3항제4호의 주사접종증명서

②검사원은 제1항의 증명서가 없는 돼지 또는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고 의심되는 돼지에 대하여는 도축을 제한하고 별표의 처리절차 및 방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은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검사신청서의 출하 농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출하농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증명서 유효기간은 최종접종일(2차 접종일을 말한다)로부터 150일(종돈과 후보돈은 1년)이내로 한다.

제8조(적용의 예외)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가축과 특수 사육·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199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 도축이 제한된 돼지의 처리절차 및 방법 (제7조제2항 관련)

### 1. 도축 제한사유 통보 및 혈청검사 실시

- 가. 검사원은 도축업 영업자로 하여금 도축제한과 관련 해당 돼지를 출하한 농가에게 도축제한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검사원은 도축이 제한된 돼지에 대하여 농가별 출하 두수의 10%(최소 3두 이상)범위내에서 채혈을 실시하고, 가축운반업자 및 출하농가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와 함께 검사원 소속 가축방역기관에 혈청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다. 혈청검사를 의뢰받은 가축방역기관은 24시간이내에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원과 해당 돼지를 출하한 농가 소재지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 2.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절차

- 가. 가축방역기관의 혈청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원은 혈청검사 결과(음성 또는 양성)와 관계없이 도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 나. 도지사는 가축방역기관의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농가의 사육중인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도지사 관할구역외의 농가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가축방역기관은 해당 농가의 사육중인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돈방별로 사육두수의 10%(최소 3두이상)범위내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혈청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도지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치와 동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가축방역기관은 다목의 규정에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다목의 혈청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25일이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b>예 방 접 종 확 인 서</b>			
①농장·부화장명		②소재지	
③농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④가축의 종류			
⑤예방약 종류		제품명:	제조업체명:
⑥접종방법	주사·분무·음수·기타	⑦접종두수	두수( )
⑧1차접종일자	. . . . .	⑨2차접종(예정)일자	. . . . .
<p>상기 가축은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자(소유자등) : 성명 (인)</p>			

..... ( 간 인 ) ..... 절 취 선 .....

제 호			
<b>예 방 접 종 확 인 서</b>			
①농장·부화장명		②소재지	
③농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④가축의 종류			
⑤예방약 종류		제품명:	제조업체명:
⑥접종방법	주사·분무·음수·기타	⑦접종두수	두수( )
⑧1차접종일자	. . . . .	⑨2차접종(예정)일자	. . . . .
<p>상기 가축은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자(소유자등) : 성명 (인)</p>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농림수산부 훈령 제718호(1990. 12. 19)  
개정 농림수산부 훈령 제 795호(1994. 9. 13)  
개정 농림부 훈령 제 955호(1998. 8. 3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질병의 발생시 신속·정확한 검사,역학조사, 병성감정의 실시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대상) 가축질병병성감정(이하 “병성감정”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대상으로 하며,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야생조수류에 대하여도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병성감정기관)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
2. 특별시·광역시의 보건환경연구원, 도의 가축위생시험소·농축산사업소·축산기술연구소·축산진흥연구소·축산진흥원(지소·지원을 포함하며, 이하 “가축위생시험소”라 한다)
3. 기타 농림부장관이 병성감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관련기관 또는 관련 민간연구소

제4조(병성감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병성감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역원장은 신청기관의 병성감정의 실시에 적합한 실험기자재,기술인력 등에 대한 현지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이 병성감정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2. 병성감정기관의 소재지

3. 실험실 요원

⑤ 농림부장관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방법) ① 가축질병의 병성감정은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검사, 부검, 미생물검사, 병리조직검사, 동물접종시험 등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병성감정용 시료채취요령에 의거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역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병성감정 실시요령은 발표에 의한다.

제6조(병성감정결과의 조치등) ① 병성감정기관은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으로 판명된 때에는 농림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발생지역의 현지조사, 소독,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출입통제 등 법 관계규정에 의한 긴급방역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병성감정기관은 제1항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병성감정결과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외의 질병중 농림부장관이 가축방역상 중요하다고 인정한 질병으로 판명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타 가축전염병이 아닌 전염성질병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가축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3호의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월별 병성감정 실적을 제3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등) ① 검역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실시기관의 실험실 요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역원장은 효율적인 병성감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병성감정지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외규정) 제5조에 의한 병성감정 실시결과 결핵병, 부루세라병, 돼지오제스키병, 추백리 및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등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방역 실시요령에 의한다.

제9조(감정업무의 정지등) 농림부장관은 제3조제3호의 병성감정기관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업무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1. 제4조제4항의 변경사항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병성감정 실시를 잘못하여 해당농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3. 병성감정 결과를 조작하거나 허위로하여 가축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때

##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199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신청서

신청자	주 소	
	상호(법인명)	
	대 표 이 사	
	주민등록번호	

타업무 겸업여부

실험실 요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요 경 력	
	학 위 소 지 여 부	
	국 가 자 격 소 지 여 부	
	기 타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제 호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실시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최초지정년월일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 립 부 장 관 (인)

# XIV. 부록

## 전국 가축위생관계기관 주소록 (98.12.26. 현재)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관할지역	
			DDD	번호		
농림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시	427-760	02 FAX	504-9438 500-2893 507-3966	전국	
농림부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원장 이관용 701.702(적봉43-7720)	430-016	0343 FAX	467-1943 467-1944 467-1945 467-1956	전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류검역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2-3	137-130	02 FAX	570-3430-9 -3235-9 570-3311	서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류검역사소	부산 북구 금곡동 490-1	616-130	051 FAX	331-0094 -0095 338-8266	부산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	대구 수성구 지산동 777 (구내전화 : 600,620,610, 611,612,623,621,622번)	706-090	053 FAX	764-0104 768-0446	대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인천 서구 가좌1동 583-1	404-251	032 FAX	575-7738/9 572-3145 576-7785	인천, 강화, 검단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	광주 북구 본촌동 379-2	502-240	062 FAX	571-0497 0498 -0497	광주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	대전 유성구 구성동 21-1	305-338	042 FAX	863-6295/6 -5644 863-6294	대전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축산계	울산 남구 신정동 646-4	680-701	052 FAX	228-2613 228-2619	울산, 언양	
경기 도축산연 연구소	본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46-15	441-460	0331 FAX	294-6762 294-6764	수원, 안양, 안산, 파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화성
	동부지소	경기도 이천시 진리동371-4	467-060	0336 FAX	635-3680 -3676	성남, 하남, 여주, 광주, 아전
	서부지소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장기리 348-10	415-800	0341 FAX	985-4020 2512 -4028	부천, 광명, 고양, 파주, 김포
	북부지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남1동 617	480-101	0351 FAX	874-2804 -2805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동북부지소	경기도 남양주군 회도읍 가곡리 산 107-3	473-840	0346 FAX	593-4011 -4012	남양주, 구리, 가평, 양 평
강원 도가축 위생시 험소	본 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727	200-150	0361 FAX	243-9581-3 -9584	춘천, 철원, 화천, 양구
	동부지소	강원도 강릉시 장현동 74-7	210-180	0391 FAX	647-6465/6 -6405	강릉, 동해, 삼척, 태백
	남부지소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098-2	220-170	0371 FAX	761-1880/1 -1890	원주, 홍천, 횡성
	중부지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부리 508-153	232-800	0374 FAX	332-6926 333-5302	영월, 평강, 정선
	북부지소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649-3	217-130	0392 FAX	636-8581 -8582	인제, 고성, 속초, 양양
충청 북 도축산 위생연 연구소	본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44-53	360-171	0431 FAX	220-5272/3 252-5503	청주, 청원
	북부지소	충북 충주시 금릉동 187-12	380-230	0441 FAX	853-5500 -4125	충주, 음성
	제천지소	충북 제천시 교양동 145-20	390-090	0443 FAX	42-5104 44-9110	제천, 단양
	남부지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39	370-800	0414 FAX	40-3567 -3566	보은, 옥천, 영동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관할지역
			DDD	번호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가족위생연구부	충남 대정시 중구 문화동 250	301-131	042 FAX 582-2249-3573	공주,금산,연기
	아산지소	충남 아산군 배방면 세교리 432-1	337-850	0418 FAX 548-2950-2951	천안,아산
	홍성지소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44-1	350-900	0451 FAX 641-2652-2651	보령,청양,홍성
	태안지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213-1	357-900	0455 FAX 675-4349-4348	서산,태안
	통합지소	충남 당진군 용연리 854	343-800	0457 FAX 352-4056-4055	예산,당진
	부여지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양북리 89	323-800	0463 FAX 833-8611-8610	논산,부여,서천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	본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1052-1	560-240	0652 FAX 221-5123-3213	전주,완주,김제,부안
	남원지소	전북 남원시 식정동 475-1	590-230	0671 FAX 635-6777-5778	남원,임실,순창
	정읍지소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 1572-1	582-810	0681 FAX 535-3526-9118	정읍,고창
	익산지소	전북 익산시 월성동 309-7	570-390	0653 FAX 834-4918-4929	군산,익산,
	장수지소	전북 장수군 장계면 담덕리 637	597-800	0656 FAX 352-9876-9877	부주,진안,장수
전라남도축산기술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본소	광주시 광산구 북룡동 89-5	506-555	062 FAX 941-2577/8-2576	나주,장성,담양,곡성,영암,장진,해남,진도,완도
	동부지소	전남 순천시 가곡동 974-1	540-080	0661 FAX 755-6396-751-1045	순천,여수,여천,구례,증거,광양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본 소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859-3	702-210	053 FAX 326-0011-3-0014	구미,칠곡,군위,성주,고령,경산,영천,청도
	북부지소	경북 안동시 용성동 458-11	760-010	0571 FAX 821-9882-4-0556	안동,영주,의성,청송,영양,봉화
	동부지소	경북 경주시 동천동 143	780-190	0561 FAX 748-6682-748-6685	경주,포항,영덕,울진,울릉
	서부지소	경북 상주시 외담동 476-1	742-320	0582 FAX 533-1751/2-532-4945	김천,상주,문경,예천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	본 소	경남 진주시 초전동 423	660-360	0591 FAX 753-5505/7-758-7927	진주,사천,산청,하동,함양,남해
	동부지소	경남 울산군 삼남면 방기리 산 15-5	689-810	0523 FAX 382-7217-382-8015	울산('98년까지 위탁관리) 밀양,양산
	중부지소	경남 창원시 용호동 5-1	641-041	0551 FAX 284-8188-8189	창원,마산,진해,김해,합안
	북부지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동 307-1	678-800	0589 FAX 931-3245-930-3518	합천,거창,의령,창녕
	남부지소	경남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900-1	650-810	0557 FAX 646-4395-645-5052	통영,거제,고성,
제주축산진흥원가축위생시험소	제주시 노형동 315-7	690-180	064 FAX 741-3554-3572	제주	

# 병성감정 실시 지정 기관

## 1. 수의과 대학

(’98. 12. 26현재)

학 교 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F A X
강원대학교 축산대학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92-1	200-701	0361) 250-8650	244-2367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서울시 광진구 모진동 93-1	143-701	02) 450-3662	455-1044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702-701	053) 950-5951	950-5955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500-957	062) 520-6505	520-6530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 가 664-14	560-756	0652) 70-3777	70-3788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690-756	064) 54-3303	56-3348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305-764	042) 821-6773	822-4216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충북 청주시 개신동 산 48	360-763	0431) 61-2396	0431) 67-3450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660-701	0591) 751-5805	0591) 751-5803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	441-744	0331) 292-6110	0331) 292-3679

## 2. 민간연구소

회 사 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F A X
대상축산 과학연구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 미리 766-1	467-860	0336) 635-3701-4	0336) 636-8174
바이엘코리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57-1	157-200	02) 3662-2484	02) 3662-4839
중앙가축 전염병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 동 59-3(대덕연구단지). 파천연구소	305-348	042) 861-4121	042) 861-4126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408-1	301-212	042) 581-2991-4	042) 581-5856
제일사료주식회사 기술연구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36	306-020	042) 624-4101	042) 624-4108
대한제당주식회사 중앙연구소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6-14	400-201	032) 770-1454	032) 770-1603
한국미생물연구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 화공업공단 1라 107	429-450	0345) 498-6106	0345) 490-6107
제일제당주식회사 사료본부 검사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로 5가 500	100-095	02) 3119-428	02) 3119-439

(농장)야외 검사서 (긴급 돼지질병정보 기록서)	모든사항을 기록하십시오	
4. 소유자 성명	1. 조사자 성명 :	2. 조사 년 월 일
주소	5. 농장 농장명	
전화번호	주소	
기타	전화번호	
	기타	

6. 경영방식(해당란에 ○ 표)

질병발생시 의뢰처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동물약품상사, 사료회사, 수의사, 기타
사육규모	총사육두수 :        두(모돈,        육성돈        비육돈,        자돈        )
돈사시설	개방형    무창돈사    스크래퍼    슬러리    톱발발효    기타
농장경영	축주자영        년,        위탁사육
급수형태	지하수,        상수도
사료구입처	사료회사명 및 종류        ,        대리점
동물약품구입처	거래처명        ,        전화번호

7. 방문이유(해당란에 V표)

	환축방문요청		돈군교체		정기검사		기타
	재검사		평가		매개체 방제		이동허가일자
	추적조사		청소 및 소독		백신접종		
	조사(검사)		검역				
8. 질병상태			음성		노출됨		발생일자
			미결정		양성		종식일자
검역	검역개시 :						
	검역해제가능일자 :						
	검역해제						
잔반급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가열처리		비가열처리			
매개체 방제 필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곤충 설치류		기타		방제완료일자    사용약제    사용량	

9. 의뢰가검물		의뢰일자	실험실명		접수번호	송장번호	수송자 성명	검사요구내용
돼지 구분	가검물 형태		가검물 수	비 고	실험실 검사결과			
					양성	음성	미결정	
10. 감수성 동물			사육두수	발병두수 환축수	최초발병일	폐사두수	최초폐사일자	
돼지	품종							
11. 배상				12. 병력				
돼지종류	지방비	국비	계					
계								
HC백신접종:								
인근농장 발병상황:						조사자 성명 :		

서식 1.

13. 임상증상 및 병변		농장명		
		WBC		체온
		1.		
		2.		
		3.		
		4.		
14. 돼지 또는 부산물의 이동 <input type="checkbox"/> 조사기간중 농장내로이동 <input type="checkbox"/> 조사기간중 농장밖으로 이동			이동일자	
농장주명		수송자		
주소		주소		
돼지 또는 부산물확인	돼지종류	품종	수량	
14. 돼지 또는 부산물의이동 <input type="checkbox"/> 조사기간중 농장내로이동 <input type="checkbox"/> 조사기간중 농장밖으로 이동				
농장주명		수송자		
주소		주소		
돼지 또는 부산물확인	돼지종류	품종	수량	
기타 특기사항 :				

서식 1-1.

중요한 이동 또는 접촉 도식	
돼지콜레라 전염원 또는 전파가능성을 기술하십시오	
농장내로 이동	농장외로 이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height: 8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 height: 10%; text-align: center;">일자</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 height: 10%; text-align: center;">일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height: 80%;"></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height: 8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 height: 10%; text-align: center;">일자</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 height: 10%; text-align: center;">일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height: 80%;"></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height: 8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 height: 10%; text-align: center;">일자</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 height: 10%; text-align: center;">일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height: 80%;"></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height: 8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 height: 10%; text-align: center;">일자</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 height: 10%; text-align: center;">일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height: 80%;"></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height: 8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 height: 10%; text-align: center;">일자</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 height: 10%; text-align: center;">일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height: 80%;"></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 height: 15%;"></div> <div style="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 height: 15%; text-align: center;">             검사중인 농장           </div> <div style="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 height: 15%;"></div> </div>	

서식 1-2

인접농장 확인								농장명							
15. 농장소유주명								16. 농장소유주명							
주 소								주 소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15. 농장소유주명								16. 농장소유주명							
주 소								주 소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15. 농장소유주명								16. 농장소유주명							
주 소								주 소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15. 농장소유주명								16. 농장소유주명							
주 소								주 소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서식 1-3



## 돼지 주요 질병 백신접종 프로그램

백신	접종 대상	접종 시기	접종량 및 부위
돼지콜레라	자돈	○포유전접종법(발병농장) : 포유전 1차 60일령 2차 ○자돈접종법(평상시) : 5-6주령 1차 8-9주령 2차 (발병 위험시): 4-5주령 1차 7-8주령 2차	1ml 근육접종
	후보돈 모돈 웅돈	○6-7개월령 보강접종 ○년 1회 보강접종(종부 2주전) ○년 1회 보강접종	
일본뇌염	모돈 및 후보돈	○5-6월경 3-4주간격으로 2회 접종	1ml 근육접종
돼지파보	모돈 및 후보돈	○종부 2-4주전 3주간격으로 2회 접종	치녀돈 5ml 근육 경산돈 2ml 근육 2ml 근육접종
돼지전염성위장염	모돈	○분만 5-7주전(1차) 분만 2-3주전(2차)	2ml 근육접종
	자돈	○경구용 : 1-3일령 1차, 3-7일령 2차 복강용 : 3일령 1회	2ml 경구접종 2ml 복강접종
돼지로타감염증	모돈	○분만 5-7주전(1차) 분만 2-3주전(2차)	1ml 근육접종
	자돈	○경구용 : 이유 7-10일 전	1ml 경구접종
유행성설사	모돈	○분만 5-6주전 1차, 2-3주전 2차	2ml 근육접종
오제스키병 (발병농장 및 발 병 우려 농장에 한하여 실시)	번식돈, 후보돈 임신돈 백신 접종 모돈의 자돈 백신 비접종 모돈 의 자돈	○3주간격 2회 접종 ○분만 6주전 1차, 3주전 2차 ○7-10주령 1차, 3주후 2차 ○3주령 1차, 6주령 2차	2ml 근육접종
돈단독	자돈 임신돈	○7-8주령 1차, 11-12주령 2차 ○종부 2-4주 전	1ml 피하접종
위축성비염	자돈	○1 일령	1ml 분무접종
	육성돈 임신돈	○4-5주령 1차, 6-7주령 2차 ○분만 5주전 1차 분만 2주전 2차	1ml 근육접종 2ml 근육접종
호흡기질병 혼합 백신	자돈	○3주령 1차, 5-6주령 2차	1-2ml 근육접종
	임신돈	○분만 5주전 1차, 분만 2주전 2차	2ml 근육접종
유행성폐렴	자돈	○1주령 1차, 3주령 2차	2ml 근육접종
	모돈	○분만 6주전 1차, 분만 2주전 2차	
대장균증	임신돈	○분만 6주전 1차, 분만 2주전 2차	2ml 근육접종